

[별표 3]

국제구조대원의 분야별 필수 자격기준 및 인원(제8조 관련)

구 분		필 수 자 격 기 준	기준 인원	출동 인원
총 인원		계	150	78
-	국제구조대장	소방장 이상 소방청장이 지정한 자	3	1
	행정관리	소방청장이 지정한 자	6	2
운영반	운영반장	소방령 이상(국제구조대로 2년 이상 활동한 자)	2	1
	국제협력 (RDC/UCC/Classifier)	소방경 이하 (소방청예규)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[별표 3]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의 영어 0.5점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갖춘 자	15	5
	운영대원	소방경 이하(국제구조대로 2년 이상 활동한 자) (소방청예규) 소방공무원 가점평정 규정의 [별표 3] 언어 능력 가점평정 기준의 영어 0.2점에 해당하는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갖춘 자	8	4
탐색반	탐색반장	소방경 이상(탐색반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)	2	1
	구조건 핸들러	현직 구조건 핸들러 구조건 핸들러 경력이 1년 이상인 자	10	6
	드론 운영	드론분야 관련 자격을 갖춘 자(보통 1종 자격 이상)	4	2
	위험물	위험물분야 학위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자 (위험물산업기사 이상 또는 화학 관련학과 학사 이 상)	4	2
	건축물 안전	건축·토목 분야 학위 또는 관련 자격을 갖춘 자 (건축산업기사, 토목산업기사, 건설안전산업기사 이 상 또는 관련학과 학사 이상)	4	2
구조반	구조반장	소방경 이상(구조반으로 3년 이상 활동한 자)	6	4
	구조대원	소방위 이하 인명구조사 자격증 보유자 구조/구급 출동부서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	54	32
물류반	물류반장	소방경 이상(물류반으로 2년 이상 활동한 자)	2	1
	물류대원	소방위 이하 구조/구급 출동부서 근무경력 2년 이상인 자 차량 또는 통신 장비 등 정비·운영 관련 자격 보유자 중장비 자격증 보유자(지게차, 크레인, 트레일러, 굴삭기) · 차량: 자동차정비기능사 이상 · 통신: 무선설비기능사, 정보통신기능사, 전기기능사 이 상	16	8
의료반	의료반장	소방경 이상	2	1
	의료대원	소방위 이하 의료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의료인(의사, 간호사) 응급의료에 관한법률 제36조에 의한 응급구조사	12 (의사 4)	6 (의사 2)

○ 기준 인원 구성

1. 국제구조대장, 행정관리, 운영반장, 탐색반장, 구조반장, 물류반장, 의료반장, 구조건 핸들러는 소방청과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다.
2. 구조대원의 경우 소방청과 소속기관 직원을 최대 70%, 시도 소속기관 직원을 최대 40% 이하로 한다.
3. 물류대원, 운영대원의 최소 50%는 소방청과 소속기관 직원으로 한다.
4. 소방청과 소속기관의 지원자가 부족하여 1호 내지 3호의 인력 구성이 어려울 경우에는 본 규

정 제7조 1항에 따라 인원 구성을 조정할 수 있다.